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동학대로 판단한 사례에서 아동학대를 행한 자를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정의함(안 제3조제8호의2).
- 보호조치 및 일시보호조치를 함에 있어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원칙의 예외로, 기존 아동학대행위자 외에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아동학대신고 등으로 조사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자 중 일시보호조치를 하는 경우를 규정함(안 제15조제5항 단서 및 각 호).
-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아동의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위임하고,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상실의 청구를 「민법」 규정에 따라 친권 상실 또는 친권 일시 정지의 선고 청구, 친권 일부 제한의 선고 청구,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 청구로 규정하면서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18조).
- 아동의 후견인 선임 청구 사유에 「민법」 규정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추가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이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아(棄兒)를 발견한 경우 발견한 날부터 후견인이 선임된 때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기아의 후견인이 되도록 함(안 제19조).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 중 상담·조사 대상에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를 포함하고, 수행 업무에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사례의 판단을 추가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소속으로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2조제3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신설 등).
- 보호대상아동 가정복귀의 예외 사유에 복귀 가정 거주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가 상담 등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고, 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대상에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를 포함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치료·교육·상담 프로그램 등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 수립·시행 시 그 대상으로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를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상담·교육 등을 제공하는 대상에도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를 포함하며, 과태료 부과대상에도 아동학대행위자와 함께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를 규정함(안 제16조제3항, 제22조제3항 제2호, 제22조의3제1항, 제22조의4제4항, 제29조의2제1항, 제46조제2항제3호 및 제75조제3항제1호의5 등).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아동학대사례판단이 완료된 후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긴급히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사례판단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보호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4제1항).
- 아동정보시스템에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등에 대한 정보 등을 입력·관리하도록 하되, 그 정보의 보존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8조의2제2항).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의 범위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감에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함(제29조의3제1항제28호 신설).
-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허가·신고를 관할하는 주체가 그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취업 등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에게 점검·확인 권한 등을 부여함(안 제29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 및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음(안 제29조의9 신설).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 업무를 위탁받은 아동

권리보장원장이 유족,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련자에 대한 면담 및 자료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사법정보가 아닌 정보에 대한 자료 제출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요구하거나 형사사법정보를 검찰총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에게 요청하거나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10 및 제29조의11 신설).

- 유족 등 면담으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업무 외 용도로 사용한 사람, 형사사법정보를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사람 등에 대한 벌칙 및 면담에 응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함(안 제71조 및 제75조).

II. 검토의견

-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관계 기관 의견

- 행정안전부는 개정안 제22조제6항¹⁾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소속으로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두고 아동학대사례판단 시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도록 한 것에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에 설치된 타 위원회와의 기능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기존에 설치한 위원회 중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와 성격·기능 등이 유사한 위원회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위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야 하고, 현행법 제12조²⁾에서 이미 아동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사례결정위원회’를 지자체

1)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소속으로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두며, 아동학대사례판단 시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 4의2. 제16조의4에 따른 재보호조치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5.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6.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로 각각 두도록 하고 있는바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는 것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법무부는 개정안 제29조의9 및 제29조의10³⁾에서 규정하는 아동학대 사망사례 분석 권한 부여 및 ‘아동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의 설치 근거 마련에 관련하여, 아동학대 사망사건 발생시 ‘아동학대사망 분석특별위원회’가 기존 수사·조사절차와 별개로 사건조사·자료

3) 안 제29조의9(아동학대사망사건의 사례 분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이하 “아동학대사망사건”이라 한다)의 예방과 효과적인 아동학대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사례를 분석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이하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이라 한다)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 및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29조의10(아동학대사망사건 관련 면담 및 자료 요청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제29조의9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 업무를 위탁받은 보장원의 장은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면담하여 아동학대사망사건 및 피해아동과 그 유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유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와 그 밖의 관계인, 피해아동등의 관계인 및 주변인
2. 아동학대사망사건 및 피해아동등과 관련된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단체에 소속된 직원
3. 피해아동등과 관련된 법원(지원을 포함한다)에 소속된 직원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아동학대사망사건 및 피해아동등에 관한 정보나 자료(형사사법정보는 제외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사망사건 및 피해아동등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

2. 아동학대사망사건 및 피해아동등과 관련된 법원(지원을 포함한다) 및 수사기관의 장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면담으로 알게 된 정보 및 제2항에 따라 얻은 정보나 자료를 제29조의9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 업무를 위탁받은 보장원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면담으로 알게 된 정보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나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면담에 응하여 의견을 말하거나 제2항에 따라 정보나 자료를 제출한 사람은 이를 이유로 소속 기관·단체로부터 해고·전보·징계·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수집 등을 진행하게 되므로 유족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중복조사 및 그로 인한 2차 피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개정안과 같이 보건복지부장관 및 아동권리보장원장이 아동학대사망사건에 관련된 행정기관의 직원 및 피해아동등과 관련된 법원 소속 직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그 담당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진술하도록 함으로써 형법상 공무원 비밀의 누설 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수사의 밀행성 또는 재판의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안 제29조의114)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찰총장,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관련하여, ‘형사사법정보’의 의미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을

-
- 4) 제29조의11(형사사법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총장,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보장원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 ④ 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제29조의9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 업무를 위탁받은 보장원의 장(제3항에 따라 형사사법정보를 제공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형사사법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형사사법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원의 장이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찰총장,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정보 제공을 요청하도록 하는 것은 그 범위가 넓고 포괄적이어서 형사사법정보가 필요한 이유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우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⁵⁾이 형사사법정보의 공동 활용을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위원 전원의 합의가 있을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는 등 형사사법정보의 유출을 엄격히 금지하는 것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법원행정처**는 상술한 개정안 제29조의10제1항제3호 및 같은조 제2항에 관련하여, 행정부에 속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아동권리 보장원의 장이 아동학대사망사건 관련 재판에 현재 관여하거나 과거에 관여하였던 사법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이나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피해아동등 관련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직무상 알게 된 사건 관련 사실이 누설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법원장에게 아동학대사망사건 및 피해아동등에 관한 정보나

-
- 5) 제6조(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협력 의무) ③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업무 처리 외의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이용할 수 없다.

제9조(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시스템의 유통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및 전자화를 통한 형사사법절차의 개선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제11조(협의회의 회의) ③ 협의회의 협의와 조정은 위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한다.

제12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한다.

- 3. 시스템을 통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간 형사사법정보의 공동 활용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형사사법정보는 제외하고 있다고 하나 그 의미가 모호하여 어떠한 정보나 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사건 관련자에 대한 비밀 유지 등을 위해 사건 관련 기록의 열람·복사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전문위원 박 동 찬)